수시과제 2015-02

학교안전교육 고시를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전 제 상(공주교대 초등교육학과)

■ 공동연구원 : 안 병 천(인천검단초등학교)

김 숙 이(학교안전연구소)

■ 연구보조원 : 이 윤 경(학교안전연구소)

■ 연구협력관 : 이재복(학교안전총괄과 교육연구관)

팽주만(학교안전총괄과 교육연구사)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학교안전연구소

Sungshin University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이 연구는 2015년도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안전연구소에서 수행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
4. 연구의 방법 ····· 4
Ⅱ. 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 정책 ····· 5
1.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 5
2. 안전교육의 개념과 의의 ····· 9
3. 안전교육의 원칙과 범주 ····· 12
4. 정부의 학교안전교육 정책 ····· 16
Ⅲ.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및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내용 ····· 23
1.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분석 ····· 23
2.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의 주요 내용 ····· 30
Ⅳ. 학교안전교육의 고시(안) 구안 ····· 47
1.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안) 검토 ····· 47
2.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고시(안) ····· 57
Ⅴ. 결론 및 제언 ····· 69
1. 결론 ····· 69
2. 제언 ····· 71

참고문헌 ····· 75

표 목차

〈표 Ⅱ-1〉 최근 3년간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단위: 건, %) ····· 5

〈표 Ⅱ-2〉 2013학년도 시간별 안전사고 ····· 6

〈표 Ⅱ-3〉 2013학년도 장소별 안전사고 ····· 7

〈표 Ⅱ-4〉 2013학년도 형태별 안전사고 ····· 7

〈표 Ⅱ-5〉 2013학년도 지역별 안전사고 ····· 8

〈표 Ⅱ-6〉 안전 관련 교육 내용 예시(재난안전) ····· 17

〈표 Ⅱ-7〉 전공 기본 이수과목 개선 방안(안) ····· 18

〈표 Ⅱ-8〉 교육부의 대상별 안전 관련 연수(안) 예시 ····· 19

〈표 Ⅱ-9〉 대상별 안전 관련 연수(안) ····· 20

〈표 Ⅱ-10〉 정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요약) ····· 21

〈표 Ⅲ-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3

〈표 Ⅲ-2〉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의 주요 내용 ····· 25

〈표 Ⅲ-3〉 안전교육 관련 주요 법령 ····· 27

〈표 Ⅲ-4〉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 현황 ····· 28

〈표 Ⅲ-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3 - 교육기준(제 28조 제1항 관련) ····· 29

〈표 Ⅲ-6〉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별 주요 내용 ····· 31

〈표 Ⅲ-7〉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관련 법령 및 지침 ····· 32

〈표 Ⅲ-8〉 생활안전영역 내용체계도 ····· 33

〈표 Ⅲ-9〉 교통안전영역 내용체계도 ····· 34

〈표 Ⅲ-10〉 폭력 및 신변안전영역 내용체계도 ····· 36

〈표 Ⅲ-11〉 약물·사이버중독영역 내용체계도 ····· 40

〈표 Ⅲ-12〉 재난안전영역 내용체계도 ····· 42

〈표 Ⅲ-13〉 직업안전영역 내용체계도 ····· 43

〈표 Ⅲ-14〉 응급처치영역 내용체계도 ····· 44
〈표 Ⅳ-1〉 학교급(학령별)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대분류의 영역별 비중 ····· 50
〈표 Ⅳ-2〉 학교급별 학교안전교육영역의 중요도 ····· 51
〈표 Ⅳ-3〉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안) ····· 51
〈표 Ⅴ-1〉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의 교육기준 ····· 70

그림 목차

[그림 Ⅱ-1] 학교안전관리의 정의 및 단계 ····· 11
[그림 Ⅱ-2] 안전교육의 범주 ····· 15
[그림 Ⅱ-3] 정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세부 과제 ····· 1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2014.2.17), 세월호 침몰사고(2014.4.16.)등 잇따른 대형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이러한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안전의식 부재와 안전 불감증이 대두되면서 안전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제고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으로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안전교육을 통해 국가 안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9월 23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안전생활' 교과를 신설(68시간)하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관련교과에 단원을 신설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11일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교육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설치하고,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고, 표준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단원 구성 및 수업에 활용하고,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체화하는 등 학교 내 체계적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횟수·시간 등을 교육과정 고시로 상세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도모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5년 2월 26일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을 발표하였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루어졌으며, 25개의 중분류, 5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학교급에 따른 표준안 내용 체계도 및 교사의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해 수업지도안도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체험형 안전교육 사례 발굴을 위해 전

국 51개의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안전교육 표준안의 세부내용 및 교사용 지도안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4월 3일 안전체험학교 시범실시 계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종합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강원의 2개 지역 3개 종합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학교로 선정하여 향후 1년간 교육청과 컨소시엄 형태로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시범·운영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각종 안전체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5년 시범 운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상반기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7월 6일에는 부처 간 협업(교육부-국민안전처)으로 체험 중심 안전연수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학교관리자 과정으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40명, 시·도교육청 및 시·도 교육연수원의 교육전문직 40명이 참여하였다. 연수프로그램은 학교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이론적 소양 및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 내 안전 교육과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토대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의 실효성 문제, 안전교육표준안의 내용 부실문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5학급 또는 15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하면 50명당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이 따로 지원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안전요원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교사를 준안전요원화 한다고 하지만 일부교사를 대상으로 15시간 연수에 그치고 있다(세계일보, 2015.4.13.). 또한 아전교육을 강화하라는 각종 공문이 일선학교에 지속적으로 하달되었고 안전교육표준안이 적용되었으나, 일선학교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체계도 잡지 못한 체 겉돌고 있다(머니투데이, 2015.4.14.).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내실 있게 적용·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안전교육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실시된 이유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교육부

는 2014년 11월 11일 발표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서 학교안전법으로 안전법령을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횟수·시간 등을 교육과정 고시로 상세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고시와 기반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단위학교 안전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학교안전교육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학교 안전교육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단위학교의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 정책 내용 분석

○ 단위학교의 안전교육 발생 현황이 어느 정도인 지를 분석하였다.

○ 단위학교의 안전교육의 개념과 의의를 규명하였다.

○ 단위학교 안전교육의 원칙과 범주, 정부의 학교안전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 학교안전 교육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 학교 안전교육 관련 법령(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별 교육표준안(교육시기 및 횟수, 교육내용, 교육방법, 보고 등)을 마련하였다.

□ 학교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

○ 학교안전교육 관련 각종 법령을 정비하였다.

○ 국가 수준의 학교안전교육 표준 교육기준안을 마련하였다.

○ 학교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개선방향을 탐색하였다.

□ 연구 범위 및 절차

○ 이 연구는 단위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을 개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7대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 이 연구는 단위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정부의 안전교육정책의 내용 분석,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분석, 학교안전교육 표준안 개발 및 개선방향의 도출 3단계로 구성하였다.

4. 연구의 방법

□ 문헌 검토

○ 학교안전교육 관련 국내외 학술지, 정책연구 및 동향 보고서, 관련 웹사이트 방문을 통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또한 문헌 검토는 이 연구의 주제 및 범위에 국한하여 검토하였다.

□ 전문가 협의회

○ 문헌 및 면담을 통해 도출된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학교 전문가, 교육연구기관, 교육청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개최하였다.

○ 도출된 안전교육 표준 교육기준안 확정을 위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 중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의 전문가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 현장 방문 및 면담

○ 학교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을 위한 현장 초·중등 교원을 중심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관련자 면담은 '목적표집(purposeful sample)'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Ⅱ. 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 정책

1.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1)]

우리나라는 인간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국가·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동안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사건 등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안전사고 이후에는 범사회적으로 안전 의식과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사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발생 비율은 12.4%(200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행정안전부, 2010).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대충', '설마', '빨리빨리' 의 문화적 풍토가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동안 안전사고는 늘 되풀이되어 왔다.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보다는 임시 처방식의 대책만 제시되고 있다(고석, 2006). 또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2)]를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표 Ⅱ-1>과 같이 2011년 20,732건, 2012년 22,907건, 2013년 24,31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위해 정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1/3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 Ⅱ-1> 최근 3년간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단위: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건수	20,732	22,907	24,312	67,951
전체건수	54,724	61,498	65,405	181,627
비율(%)	37.9	37.2	37.2	37.4

소방방재청의 재난통계에 의하면 1995-201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인적 재난 사건

1) 이 자료는 학교안전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무엇이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가?)에서 전제상(2015)의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안전교육 실태와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2)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전국 65개 종합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 상담, 핫라인, 어린이안전 넷 등으로부터 수집한 위해정보 DB 및 감시시스템.

발생은 287,937건에서 1999년에 314,517건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286,851건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2014년 세월호 사태 등 최근 과거형 대형재난이 다시 발발함으로써 그간 우리 사회가 공들여 놓은 재난으로 인한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노력을 한순간에 허무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추세이다(황명진, 2014).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2005)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5.6명이었으나 한국은 8.7명으로 멕시코 13.6명, 미국 9.2 명에 이어 회원국 중 3위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안전사고의 57.7%가 학교 및 기타 공공 행정구역과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09).

실제로 2013학년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시간별 안전사고, 장소별 안전사고, 형태별 안전사고, 지역별 안전사고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4).

첫째, 시간별 안전사고는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 간 105,08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체육수업 28.4%, 점심시간 18.7%,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17.8%, 체육 외 수업시간 15.2%, 학교행사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2> 2013학년도 시간별 안전사고

학교 급별	수업 시간 (체육외)	체육 수업	점심 시간	휴식 시간 및 청소시간	특별 활동	학교 행사	등하교	합계
유	4,096	627	697	462	59	415	673	7,029
초	5,624	8,414	8,377	6,654	1,188	1,936	2,934	35,127
중	3,289	12,014	6,111	6,567	2,503	2,911	1,005	34,400
고	2,729	8,698	4,323	4,899	2,242	3,745	1,225	27,861
특수	152	46	54	57	13	28	50	400
기타	34	69	39	59	19	30	21	271
계	15,924	29,868	19,601	18,698	6,024	9,065	5,908	105,088
비율	15.2%	28.4%	18.7%	17.8%	5.7%	8.6%	5.6%	100%

둘째, 장소별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표 Ⅱ-3>과 같이 운동장 41.6%, 부속시설 19.1%, 통로 16.8%, 교실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3〉 2013학년도 장소별 안전사고

학교 급별	교실	운동장	통로	교외활동	부속시설	가정기타	합계
유	3,493	1,436	760	393	925	22	7,029
초	6,375	12,821	7,284	1,760	6,828	59	35,127
중	4,659	15,905	5,753	1,823	6,197	63	34,400
고	2,831	13,422	3,709	1,875	5,956	68	27,861
특수	122	59	74	30	114	1	400
기타	32	109	48	18	63	1	271
계	17,512	43,752	17,628	5,899	20,083	214	105,088
비율	16.7%	41.6%	16.8%	5.6%	19.1%	0.2%	100%

셋째, 형태별 안전사고로는 〈표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 힘 노출 38.4%, 낙상(넘어짐) 27.3%, 사람과의 충돌 13.6%, 낙상(미끄러짐) 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4〉 2013학년도 형태별 안전사고

학교 급별	사람과의 충돌	물리적힘 노출	낙상-넘어짐	낙상-미끄러짐	낙상-떨어짐	기타	합계
유	798	3,027	1,734	388	281	801	7,029
초	4,013	13,543	10,203	3,238	2,268	1,862	35,127
중	5,151	13,841	9,001	3,127	1,141	2,139	34,400
고	4,230	9,752	7,518	3,266	981	2,114	27,861
특수	26	145	128	30	20	51	400
기타	40	82	87	32	19	11	271
계	14,258	40,390	28,671	10,081	4,710	6,978	105,088
비율	13.6%	38.4%	27.3%	9.6%	4.5%	6.6%	100.0%

넷째, 지역별 안전사고로는 <표 Ⅱ-5>와 같이 학생 수 대비 사고건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0.9%에서 2.4% 수준까지 이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약 1.5%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5> 2013학년도 지역별 안전사고

지역	계			2012			2013		
	건수	학생 수	비율	건수	학생 수	비율	건수	학생 수	비율
서울	34,589	2,286,764	1.5%	16,865	1,150,609	1.5%	17,724	1,136,155	1.6%
부산	16,375	851,187	1.9%	8,122	436,675	1.9%	8,253	414,512	2.0%
대구	10,845	683,829	1.6%	5,457	345,492	1.6%	5,388	338,337	1.6%
인천	9,999	747,100	1.3%	4,911	372,805	1.3%	5,088	374,295	1.4%
광주	6,755	463,847	1.5%	3,407	234,005	1.5%	3,348	229,842	1.5%
대전	5,943	445,294	1.3%	2,872	220,529	1.3%	3,071	224,765	1.4%
울산	5,423	335,193	1.6%	2,764	171,571	1.6%	2,659	163,622	1.6%
세종	187	13,373	1.4%	0	0	0.0%	187	13,373	1.4%
경기	52,434	3,378,593	1.6%	24,800	1,693,258	1.5%	27,634	1,685,335	1.6%
강원	6,590	383,218	1.7%	3,112	194,127	1.6%	3,478	189,091	1.8%
충북	6,105	406,824	1.5%	3,169	207,596	1.5%	2,936	199,228	1.5%
충남	7,111	497,366	1.4%	3,666	255,564	1.4%	3,445	241,802	1.4%
전북	8,124	499,252	1.6%	4,090	253,093	1.6%	4,034	246,159	1.6%
전남	3,763	394,459	1.0%	1,841	188,301	1.0%	1,922	206,158	0.9%
경북	11,600	642,650	1.8%	5,956	325,459	1.8%	5,644	317,191	1.8%
경남	13,497	897,193	1.5%	6,824	450,353	1.5%	6,673	446,840	1.5%
제주	3,758	172,346	2.2%	1,698	85,020	2.0%	2,060	87,326	2.4%

2. 안전교육의 개념과 의의[3)]

안전에 관한 사전적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Morz(권봉안 외, 1997)는 안전이란 “사고의 예방과 개인의 피해 또는 사고로부터 오는 재산적 손실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였다. Marland(곽은복, 2008 재인용)는 “인간의 행동 수정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안전은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이며,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알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안전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안정성과 건강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는 교육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5). 그러므로 안전교육이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단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면서 이를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행동의 습관화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의 발생 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공배완・안황권, 2009).

안전교육은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은 학교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학교교육은 비교적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대처가 미흡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배완 · 안황권, 2009). 학령기에 시행하는 안전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길러주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양성한다는 장점을 가진다(김신정·김성희, 2009). 행정안전부(2011)에 의하면, 안전교육의 원리는 일회성의 원리로 단 1회의 교육의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과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특성이며, 지역적 특수성의 원리는 지형, 산업, 인구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하며, 인성 교육의 원리로 인격에 관한 교육,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실천 교육의 원리로 교육을 통하여 안전 태도 및 습관을 형성,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올바른 대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

3) 이 자료는 학교안전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무엇이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가?)에서 전제상(2015)의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안전교육 실태와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에 의거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이상과 같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위학교 현장교원들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전문 지식을 숙지하고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배완 등(2009)은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구성은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로 나뉘어서 실시되고 있으며, 크게 학교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규은 등(2012)은 문헌 분석과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구성내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안전, 가정생활안전, 사회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해안전, 응급처치의 총 6개 영역을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초등단계에서의 안전교육은 각 교과 단원에서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교과목의 뒷전에 밀려 특별활동 시간이나 생활지도를 통해 별도의 안전교육용 교재를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석혜민 외, 2013; 김신정, 2010).

특히, 안전의 개념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로서 Marland(1973)

는 인간의 행동수정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다(김수장, 2012).

미국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을 도미노이론으로 설명하여 사고발생은 유전·사회적 환경, 인간의 결함, 불안전한 행동과 인적·물적 위험, 사고, 상해의 5단계가 있으며, 1단계 사고 원인이 발생하면 도미노 같이 다음 것이 넘어져 연쇄적 과정을 거쳐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 가장 중요한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인적·물적 위험을 제거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시교육청, 2014:11).

실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3항에서 '재난 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4항에서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안전관리' 라고 할 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Ⅱ-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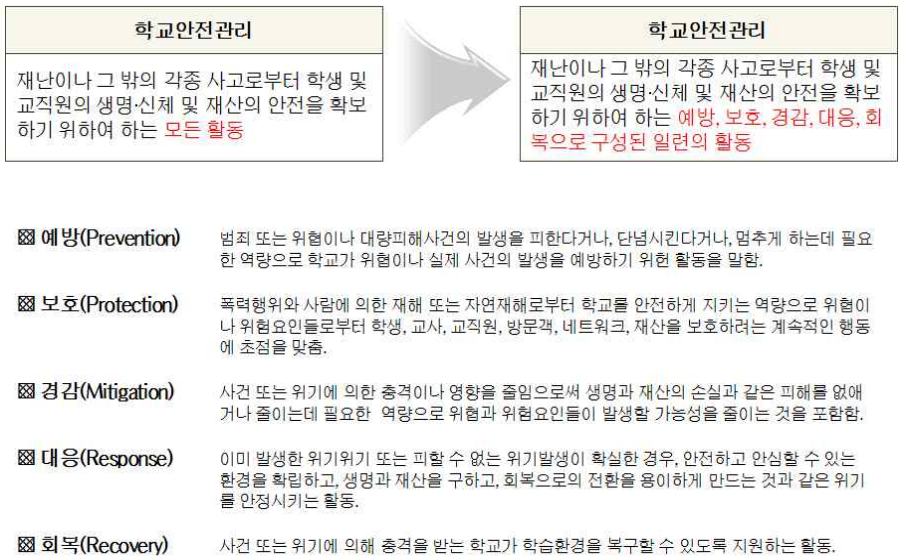

[그림 Ⅱ-1] 학교안전관리의 정의 및 단계

학교 안전 관리와 관련한 기본 개념에 기반하여 보면, 안전교육이라 함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김

신정·김성희, 2009:146).

실제로 자연 재난 및 화재를 비롯한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교사나 전문 구조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스스로 여러 형태의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예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인 안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서울시교육청, 2014: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안전교육 담당자는 학교의 장 혹은 담당교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은 현직교원들이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대처능력 등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장 교원들은 교원양성기관 단계부터 전문성 높은 안전교육을 수업을 이수해야 하며, 교직입문 이후에도 실습 중심의 체화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안전교육 연수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안전교육의 원칙과 범주[4)]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에 대해, 영국의 RoSP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와 PSHE(Personal Social Health Education)[5)] Association은 2006년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교 안전교육 원칙에 대해 Jenny McWhirter and Cassius Francis(2012)는 몇 가지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김경회 외, 2015).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의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에 대한 접근 방식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정, 정책, 교직원·학생·학부모 사이의 관계와 넓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능동적인 접근을 통한 교육 및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의 모든 안전교육은 능동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능동적인 접근이란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것,

---

4) 안전교육의 원칙과 범주의 내용은 김경회 외(2015)의 교원 양성・연수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교원 양성·연수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5) PSHE : ‘health and wellbeing, relationship, living in the wider world’ 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한 영국의 교육과정

신체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 짝이나 그룹을 형성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 독립적으로 혹은 그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타인의 시각에서 규칙을 적용하거나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 것 등이다. 또한 활동적인 학습은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학습 환경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 시 학생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 시 학생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 설계 및 참여, 학교위원회 참여, 정규 교육과정 외의 활동 선택, 멘토링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 내용에는 위험 사정(예: 위험 수준에 대해 사소한 위험, 중간 위험, 큰 위험으로 구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조절하거나 관리하는 행동 취하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 행동에 대해 파악한다. 각종 자료를 통하여 특정 연령 및 그룹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연령 및 발달단계, 사회적·문화적 요소, 성별 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나누어진 각 군 별로 특히 요구되는 안전행동 및 학습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PSHE (Personal Social Health Education)에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PSHE의 일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안전교육은 정서, 기술, 태도, 가치 등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유연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에 관한 주제들은 저학년 때부터 소개되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필수단계, 정확한 용어, 지식의 확장, 기술발달 등을 통해 그 개념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현실적이고 밀접한 환경 조성 및 자원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한다. 실제 사례 및 예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잘못된 개념(예: 어린이들 사이의 따돌림은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등)을 수정하도록 한다.

일곱째,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경찰, 소방서, 지역사회기관, 교육기관 등 학교와 협력하여 넓은 범위에서 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또한 학부모·보호자 등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파악하며, 안전교육과 관련된 방안을 개발 및 중재하는데 함께 하도록 한다.

여덟째, 위험 및 보호 요인을 파악한다. 위험 및 보호 요인은 크든 작든 학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위험 요인들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적 수준 (예: 지식, 기술), 학교 수준 (예: 정책), 또래 집단 수준 (예: 행동), 가족 수준 (예: 집안 규칙), 지역사회 수준 (예: 범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 및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사고 예방 및 개인 안전을 위한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하여 안전교육 자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홉째,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리적 위험 및 보호 요인들은 개인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과거의 사고, 따돌림, 폭력, 학대 경험과 연관이 있다. 전 학교 및 전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자신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심리적 측면이 역동적으로 형성되며, 안전한 환경 조성은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열 번째,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 아래 긍정적인 모델을 채택하고, 안전한 동작에 대해 보상을 한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행위를 하는 것은 단기적, 장기적인 장점을 파악하고, 건강에 대한 위해 행동을 수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어린이와 성인은 관찰 및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학습한다. 또한 정적 강화를 통한 동기부여를 통해 안전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Jenny McWhirter and Cassius Francis, 2008:8-9).

요컨대,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원칙은 학생을 포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능동적으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 및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학부모·보호자 등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 및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은 연령 및 발달단계, 사회적·문화적 요소, 성별 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급별로 특히 요구되는 안전행동 및 학습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서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지도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안전교육의 범주는 영국의 RoSP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와 PSHE(Personal Social Health Education) Association의 안전교육 10개 원칙에 의하여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계획 및 실행, 교육 및 학습, 심리사회적 위험 및 보호 요소, 지역사회 정보, 전 학교·전 지역사회적 접근이다.

첫째, 계획 및 실행이다. 이는 안전교육 10원칙 중 2가지를 포함하며, 안전교육의 계획 및 중재에 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이 범주에는 '평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안전과 위험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안전교육 과정을 확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 및 경험 획득을 위해 전문가와 협업하며, 모든 자원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접근이다. 이는 안전교육 10원칙 중 3가지를 포함하며, 교육

및 학습 방법에 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어린이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교육하고, 정적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행동을 유도한다. 또한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바탕으로 한 행동 중심적 교육을 하는 것이다.

셋째, 심리사회적 위험 및 보호 요소이다. 이는 어린이와 학생들 개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안전 및 웰빙을 포함한다.

넷째, 지역사회 정보이다. 이는 학생들의 주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학생이 처한 환경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및 환경을 평가한다. 또한 위험행동 및 보호 요소에 관한 지역 및 국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며 평가한다.

다섯째, 모든 학교, 모든 지역사회적 접근이다. 이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생태학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안전 행동에 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안전행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범주를 도식화하면 [그림 Ⅱ-2]와 같다(김경회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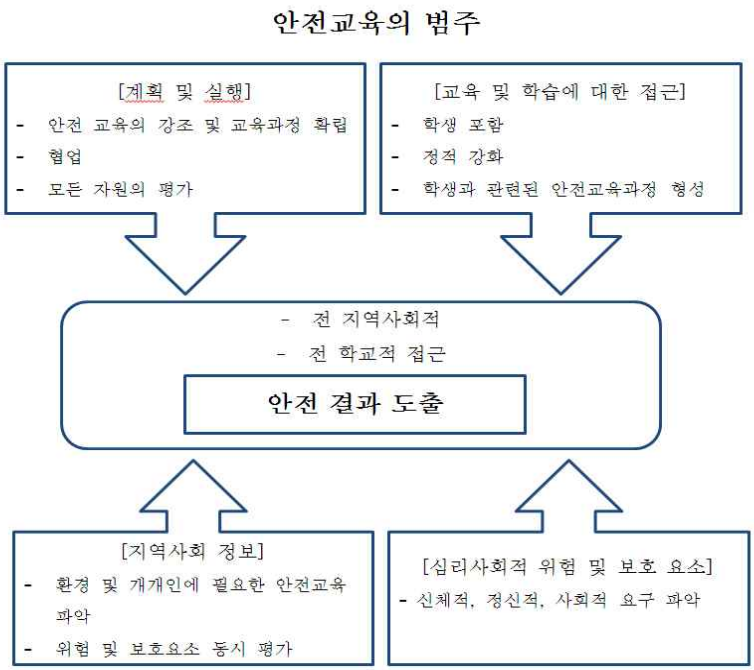

[그림 Ⅱ-2] 안전교육의 범주

출처: 김경회 외(2015)의 교원 양성·연수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교원 양성·연수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보고서. p.28.

4. 정부의 학교안전교육 정책

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 학교교육을 통하여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활동 시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안전대책은 안전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며, 안전한 교육활동의 제공과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을 밝혔다. 정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비전은 생명존중 및 안전사회 구현을 제시하면서 주요목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배양,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 안전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및 예방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 종합 대책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과 관련된 세부 과제는 다음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4).

1영역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 시행 ▸ 학교 안전교육 강화 ▸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체화
2영역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 ▸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 ▸ 교원 임용·승진시 응급구조능력 평가 ▸ 모든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실시
3영역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 여건 조성 ▸ 학교내외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4영역	대학 안전관리 강화 ▸ 대학 안전관리 평가 및 정보공시 실시 ▸ 학생 활동 시 사전 안전점검 강화
5영역	교육 분야 안전 인프라 구축 ▸ 안전정책 총괄부서 신설 ▸「학교안전법」으로 학교 안전교육 법령 일원화 ▸ 교육청 평가·감사 시 안전교육, 점검요소 강화 ▸ 학교 내 안전 교육 등과 관련 전문연구 실시

[그림 Ⅱ-3] 정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세부 과제

위의 세부과제에서 교원과 직접 관련된 '교원양성 및 연수정책' 관련한 과제[6]는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행,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교육부, 2014).

첫째는 학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 교과 또는 단원을 신설하여 2018학년도부터 적용 실시하도록 한다. 이는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교과 또는 단원 내용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시간 배당 기준 등은 교육과정 개정 시 확정하도록 한다. 초등 1~2학년 통합교육과정에 「안전 생활」 교과 신설 검토하고, 초등 3~고 3까지는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 신설한다. 체육, 기술·가정, 과학 등 관련 교과에 안전관련 단원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안전 관련 교육 내용은 <표 Ⅱ-6>과 같다.

<표 Ⅱ-6> 안전 관련 교육 내용 예시(재난안전)

영역	초 1~2	초 3~6	중 1~3	고 1~3
[재난안전] 화재, 폭발·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불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기	-일기예보 놀이 -화산과 지진 -전열기구 사용법 및 사용 실습	-화재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과 예방 -소화기 사용법 실습 -재난시 대피법 실습	-재난의 종류와 대처 방안 -재난시 대피법 실습

둘째는,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교원양성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① 교원양성기관의 전공과목에 안전내용 강화 또는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 교과 등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 강화 또는 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이를 2016년부터 실시한다. 또한 과목 신설 시에는 전공 기본이수과목에 '(가칭)유아안전교육', '(가칭)초등안전교육',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과목을 추가한다. 유·초·중등·보건 전공이수 기준은 총 50학점이상으로 이중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 기본 이수과목 개선 방안(안)은 <표 Ⅱ-7>과 같다.

6) 이 자료는 학교안전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무엇이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가?)에서 전제상(2015)의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안전교육 실태와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표 Ⅱ-7> 전공 기본 이수과목 개선 방안(안)

개정 법령	구분		현 행	개 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고시)	이수 조건		총 21학점(7과목) 이상	
	유아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교육 등 17개 과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교육, 유아안전교육 등 18개 과목
	초등		초등윤리, 초등국어 등 12개 과목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안전교육 등 13개 과목
	중등	체육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등 12개 과목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13개 과목
		보건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학교보건및실습 등 13개 과목	동일

② 재학 중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할 것을 추진한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추진하여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또한 실습과정 설치·운영 현황을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양성기관의 내실 있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교원 임용·승진 시 응급구조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가칭) '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신설하고 임용·가산점과 연계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가칭 '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국가 공인)'을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 교원임용 및 승진 시 가산점 부여 추진한다.

【학교안전관리지도사 역할 및 응시자격 예시】

· (역할) 학생대상 학교안전교육 등 실시

· (응시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등

· (시험내용) 안전, 구급, 재난관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면접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신설 전까지는 소방안전교육사* 등 안전 관련 기존 국가 공인 자격과 연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영유아, 학생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소방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 구급 등 관련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임용 시에는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승진은 선택가산점*의 하나로 추진하되,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점수 규모 등 확정하여 적용할 것('15년 규정개정, '16년 평정 시부터 활용)을 발표 하였다.

넷째는, 체육교사 선발 시 수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2019년부터 중등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 종목을 필수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일예로 서울·경기 등은 공립 중등체육교사 2차 실기평가 과목에 수영을 필수로 지정(서울 : 높이뛰기·마루·수영·농구(공통), 축구 또는 무용 중 택 1)하고 있다.

다섯째는 모든 교원을 대상 안전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① 전체교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 개설 운영한다. 전체교원(43만 명) 대상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 신규로 운영한다. 이는 대책 안을 발표한 2014년 하반기부터 즉각 실시하는 것이다. 향후 3년 기간 내('14~'17년)로 전교원이 이수하도록 구성하되,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체육·보건교사부터 우선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실습중심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초등, 중등교원, 관리자 등 대상에 따라 연수 내용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상별 안전 관련 연수(안)의 예시는 <표 Ⅱ-8>과 같다.

〈표 Ⅱ-8〉 교육부의 대상별 안전 관련 연수(안) 예시

대상	주요 연수 내용
공통	1. 안전의 기본원리 2. 국가재난 안전관리체계 이해 3. 학교 안전매뉴얼 이해 4. 안전 수영(*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 안전수영 강습 활용)
초등	1. 교통안전 :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2. 화재안전 : 가정 내 화재 예방 등 3. 생활안전 : 여름철, 겨울철 안전생활, 놀이터 안전 등 4. 신변안전 : 어린이 성폭력, 유괴 등 예방
중등	1. 교통안전 :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선박, 항공, 철도 등 2. 화재안전 : 화재 예방 및 대응방식, 실험실 안전 등 3. 폭력 및 신변안전 :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 및 언어폭력 4. 약물·유해 물질 안전 : 음주, 흡연 등 5. 직업안전 : 실험실습 등
관리자	1. 건축시설 관리 2. 가스안전, 전기안전, 소방안전 3. 재난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의 방식은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전기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학교안전 공제회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강의 구성은 팀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여섯째, 신규교원 및 자격연수 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규교원 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연수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구체적인 대상별 안전 관련 연수(안)은 <표 Ⅱ-9>와 같다.

<표 Ⅱ-9> 대상별 안전 관련 연수(안)

대상	주요 연수내용	연수시간	대상 인원(연)	추진 일정
신규 교원	기본 응급조치, 유형별 응급조치 화재 및 자연재난 시 대피요령 등	15시간	약 12,000명	향후 신규교원 연수 시 실시
정교사	기본 응급조치, 유형별 응급조치 화재 및 자연재난 시 대피요령 등 생활안전, 교통안전, 유해 물질 안전 등	15시간	약 9,800명	매년 자격 연수 시 실시
교(원)장 교(원)감	안전관리체계, 기본 응급조치, 관리자로서 책임의식,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 사항 등 실시	15시간	약 5,700명	

일곱째, 학교단위 교원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초·중등학교 모든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이상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건법을 개정한다. 또한 보건교사, 체육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강사 등은 매년 이수, 그 외 교직원은 매 3년마다 이수하도록 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교원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매학기별 1회 이상 실시·교육감 보고하도록 하며, 연수 시 학교 내·외부 관계 전문가 등을 활용하고, 화재·지진 등 가상 상황 가정 후 훈련 실시한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 운동회, 학교 축제 등 각종 행사 전에 반드시 학교장 책임 하에 교원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교사를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양성, 연수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학교 급별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통일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2월 26일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2014. 11. 11)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사이버/재난/직업/응급처치)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였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결과(박효정,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2015. 2월)를 토대로 학생 발달단계(유아~고교)에 맞게 체험중심으

로 개발되었다. 초등에서는 생활안전, 폭력·신변 안전 영역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 시 직업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그간 학교(유·초·중·고)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중등) 초 4개 교과, 중 6개 교과, 고 5개 교과에서 교육, (유치원) 2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에서 교육하도록 하였다. 안전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위촉하여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루어졌으며, 25개의 중분류, 5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학교급(유·초·중·고)에 따른 표준안 내용 체계도 및 교사의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해 수업지도안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학교 급별로(유, 초1~2, 초3~4, 초5~6, 중, 고) 약 100~150차시씩 제공하였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10> 정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요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 안전	시설이용 안전	실험실습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공연장, 극장, 목욕탕 등), 제품안전
	신체활동 안전	실내 활동 안전, 실외활동 안전, 체육활동 안전, 여가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유괴 및 미아사고
교통 안전	보행자 안전	교통 표지판 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 보행안전(인도와 차도의 구분, 자동차 사각지대 인지 등)
	자전거안전	안전한 자전거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 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자동차안전	자동차 사고의 원인, 자동차 사고예방법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항공, 선박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폭력 및 신변보호	학교폭력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신체폭력, 금품갈취강요), 심리 정서적 폭력 (분노와 갈등 조절,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성매매 예방
	자살	자살 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약물중독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마약류 폐해 및 예방, 기타약물 폐해 및 예방
	사이버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재난 안전	화재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발생시 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직업 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 안전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문화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과 관리	산업재해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 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 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 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및 골절처치. 화상 응급처치, 갑작스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Ⅲ.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및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내용

1.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분석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예방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등이 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통해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21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서는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4조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 5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의 주요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의 주요 내용

법령	주요 내용
학교보건법	제9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조의 2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7조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5 ③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Ⅲ-3>과 같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Ⅲ-3> 안전교육 관련 주요 법령

법령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제1항)
	법 제8조의2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 ·확인 의무)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제1항)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 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 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름(제1항) - (교육내용)교통안전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학교보건법	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법 제9조의 2 (보건교육 등)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제1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제2항)
아동복지법	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학교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제1항) - (교육내용)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를 매년 1회 보고(제2항) - (보고경로)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 →관할 시·군·구청장 / 유치원 원장 및 학교장 →관할 교육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함(제1항)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교육 :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재난대비 안전교육 :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 교통안전 교육 :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해당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미실시 가능(제3항)

출처 : 서울시교육청(2014). 학생안전매뉴얼, pp.8-9.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관한 법률들이 다양하다 보니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교 안전교육은 여러 가지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교행정가들, 교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손희권 외, 2014). 이와 같은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 기본법을 제외한 학생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을 학교안전법의 7대 표준안을 기준으로 교육 실시, 교육시간, 보고에 대한 규정 여부를 정리하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 현황

관련 규정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 및 신변안전 교육	약물·사이버 중독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학교안전법	●	●	●	●	●	●	●
학교보건법	-	-	○ (성교육)	○ (약물)	-	-	○
학교폭력법	-	-	◎	-	-	-	-
아동복지법	-	●	●	●	●	-	-
성폭력예방법	-	-	●	-	-	-	-
성매매방지법	-	-	●	-	-	-	-
소방기본법	-	-	-	-	○ (소방)	-	-
자전거법	-	○	-	-	-	-	-

* 주: (○) 교육실시 규정, (◎) 교육시간 규정, (●) 교육시간 및 보고 규정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4).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개선방안. p. 2.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1항에서는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 중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 및 실시주기,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

은 아동복지법 시행령뿐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표 Ⅲ-5>와 같이 구체적인 실시주기,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Ⅲ-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3 - 교육기준(제 28조 제1항 관련)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학교 취학전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초등학교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1.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2.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 3. 중독 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4.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중·고등학교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 4.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2.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의 주요 내용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그간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위촉하여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루어졌으며, 25개의 중분류, 5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었다.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별 주요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표 Ⅲ-6〉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별 주요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교통 표지판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자전거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 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사고의 원인
		자동차사고 예방법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폭력 및 신변안전	학교폭력	학교폭력
		언어/사이버 폭력
		물리적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약물·사이버중독	약물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사이버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 요령
		지진·대설· 한파·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7개 영역	25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표 Ⅲ-7>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영역	중분류	관련근거	비고	반영시간(년)
생활안전	체육 및 여가활동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학교급식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매년 2회 이상)	2
	실험실습안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3
교통안전	자전거안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1항	(2개월에 1회 이상)	10
	오토바이안전			
	자동차안전			
	대중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기별 1회 이상)	4
	성폭력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1항	(6개월에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포함	8
	자살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학기별 1회 이상)	2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매년 1회 이상)	1
약물 및 사이버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학교보건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	(3개월에 1회 이상)	10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매년 1회 이상)	
	스마트폰 중독 예방			
재난안전	화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	(6개월에 1회 이상)	6
	사회재난			
	자연재난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병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	학교보건법	2시간이상의 실습	4
	심폐소생술			
	상황별응급처치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	(3개월에 1회 이상)	10

가. 생활안전

생활안전교육은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체육 및 여가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 방지교육이 발단단계에 따라 학교 급별로 구성되었다.

<표 Ⅲ-8> 생활안전영역 내용체계도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및 제품 이용안전	시설 안전	교실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끼임 사고 조심하기 화장실 안전하게 이용하기 공공장소에서 규칙 지키기 전기감전 조심하기 계단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이용하기 미끄러운 곳에서 조심하기 환풍구와 맨홀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전한 등굣길 안전한 교실활동 화장실에서 안전하게 미끄럼 사고의 위험 복도와 계단에서 안전한 통행 특별실에서 안전 안전한 놀이기구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전 출입문, 현관문 안전하게 사용하기 고마운 전기 위험한 전기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기 공연장에서 안전, 비상구 대피로 안전 시설물 안전(맨홀 및 환풍구, 공사장)
	제품 안전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전기감전 조심하기 식중독 예방법 알기 학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식품첨가물 유해성 알기	안전한 장난감 놀이 안전한 학용품 사용 안전한 공산품 사용 식품첨가물 안전 전자제품 안전하게 식중독 예방
	실험·실습 안전	-	과학 실험 시 보호 장구 사용법 알기 과학실험 시 안전하게 실험실습 도구 사용하기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알기 공작 실습 시 안전수칙과 도구 사용법 알기 조리/가사 안전하게 실습하기
신체활동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신체활동 안전하게 하기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놀이 탈 것 안전하게 이용하기, 보호 장구 놀이기구 안전하게 이용하기 탈 것 안전수칙 이해하기, 보호 장구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활동하기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 안전하게 숲 체험활동하기 현장체험 안전하게 다녀오기 안전하게 캠핑활동 참여하기	동물과 안전하게 지내기 탈것 안전-자전거,롤러스케이트, 인라인, 킥보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스포츠 활동 안전 물놀이 안전 생존수영 안전한 공놀이 안전한 캠핑활동 안전하게 등산하기
유괴·미아 사고 예방	유괴·미아사고 방지	실종, 유괴, 미아상황 알고 도움요청 길을 잃었을 때 도움 요청하기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중분류	소분류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 및 제품 이용 안전	시설 안전	다중 밀집시설 이용 시 안전 및 에티켓 가정 및 교내의 소방시설 사용방법 익히기	-
	제품 안전	가공식품 첨가물의 특성과 유해성 이해하기 안전한 식품 감별하기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기호식품의 특성과 유해성 이해하기 전기, 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법 유해한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특성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알고 물건 선택
	실험·실습 안전	실험실 안전수칙이해 및 보호 장구의 중요성 이해하기 실험실 사고 발생 시 대처행동알고 실천하기 과학실습 시 약품의 특성 및 안전한 실험도구 사용법 알기 공작 실습 시 안전수칙과 도구사용법 알기 조리/가사 실습 시 도구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험실 안전수칙이해 및 보호 장구의 사용방법 알기/실습
신체활동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물놀이 안전수칙 이해하고 사고에 대처하기(생존수영/바다/계곡) 자전거. 인라인 등의 안전한 이용법 준비, 정리운동 실시 및 도구 안전 선택한 운동의 안전수칙 지키기(빙상, 설상) 등산 안전수칙의 이해 및 조난 구조요청 운동 상해 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캠핑 장소의 선택과 사고 시 대처방법	생존 위한 수영 익히기 익수자 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이해 등산안전수칙이해 및 조난 구조요청 선택한 운동의 안전수칙 지키기(설상) 운동 상해 발생 시 대처방법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요령 심폐소생술의 방법 이해하고 실습 캠핑중발생할수있는각종안전사고의유형과특성
유괴·미아 사고 예방	유괴·미아사고 방지	-	-

나. 교통안전

교통안전교육은 교통 표지판 구별하기, 길 건너는 방법, 보행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관리, 오토바이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사고 운전 중 주의사항,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피해, 자동차 사고 예방법,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표 Ⅲ-9〉 교통안전영역 내용체계도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보행자 안전	교통표지판 구별하기	표지판 신호등	표지판 신호등
	길 건너는 방법	횡단보도 길 건너기 육교 지하도	횡단보도 길 건너기 육교와지하도 길 걷기와 놀이
	보행안전	길 걷기 놀이 사각지대	사각 지대 내 외륜차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안전한 자전거 관리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준비 안전한 자전거 타는 장소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준비 안전한 자전거 타는 장소 안전한 자전거 타기
오토바이 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	-
자동차 안전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피해	-	-
	자동차 사고 예방	자동차의 이해 안전띠 매기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의 이해 안전띠 매기 어린이 통학버스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안전 수칙	대중교통의 의미 안전한 버스이용 안전한 지하철 이용 안전한 비행기, 선박이용	대중교통의 의미 안전한 버스이용 안전한 지하철 이용 안전한 비행기, 선박이용

중분류	소분류	중학교	고등학교
보행자 안전	교통표지판 구별하기	-	-
	길 건너는 방법	-	-
	보행안전	-	-
자전거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안전한 자전거 관리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준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준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오토바이 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피해	자동차특성의 이해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피해	자동차 측성의 이해
	자동차 사고 예방	안전띠 매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매기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안전 수칙	대중교통이용 안전수칙	대중교통이용 안전수칙

다. 폭력 및 신변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교육은 학교폭력, 언어/사이버 폭력, 물리적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성매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법, 자살 예방 및 대처 방법,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표 Ⅲ-10〉 폭력 및 신변안전영역 내용체계도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학교폭력을 이해하기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노래를 통한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이해 손이 하는 좋은 일 부끄러운 일 발표 학교폭력 처벌과 징계절차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이해와 발표
	언어/사이버 폭력	언어(사이버)폭력의 의미를 알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 언어폭력의 유형 및 사례를 알고 예방, 대처하기 올바른 언어 사용 언어폭력 대처법 거부 표현하기 도움 청하기 신고하기	친구에게 하는 좋은 말. 싫은 말 알고 실천하기 언어/사이버 폭력의 의미를 알고 생활 반성하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 언어생활 점검 언어/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사례를 통해 알고 나의 상태 점검하기 언어폭력의 유형 이해 (놀리기, 욕설) 고운 말 칭찬 릴레이 올바른 이모티콘 사용 악성 댓글 예방 가해자와 피해자 되지 않기 올바른 언어습관, 바람직한 대화법 알기 자가 체크 및 적절한 표현 올바른 채팅 용어 사용 예방 표어 제작 언어/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알고 예방 및 대처하기
	물리적 폭력	신체폭력의 의미를 알고 사이 좋게 신체놀이하기 신체폭력 예방과 대처 알기 친구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거나 가져가지 않기	신체폭력을 알고 그에 대한 피해와 예방대책 알기 신체폭력의 개념이해 그림과 동영상을 통한 신체폭력 인지 사례를 통해 신체폭력의 유형 이해 신체폭력 피해자 심정 이해 및 발표 노래를 통한 신체폭력의 예방방법 이해
		-	신체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심각성을 인식하기 뮤지컬 활동을 통해 피해자 가해자 마음이해 신체폭력 가해자와 방관자에 대한 징계조치 이해하고 예방하기 금품갈취 사례를 통해 금품갈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유형을 구별하기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	그림을 통한 금품갈취 유형 인식 글을 통한 금품갈취 유형의 이해 동영상을 통한 금품갈취 인지 역할극을 통한 금품갈취의 유형 인지 학교에서 나타나는 금품갈취 사례를 통한 금품갈취의 유형과 법적 조치 알기 괴롭힘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하기 또래 조정활동을 통한 친구문제 도움주기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배우기
	집 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의 이해-친구의 의미 집단 따돌림의 유형 및 사례를 알고 예방, 대처하기 집단 따돌림의 예방 집단 따돌림의 대처법 신고접수방법 및 도움요청	집단 따돌림의 의미 이해하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조력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예방 집단 따돌림의 유형 및 사례 집단 따돌림의 위험성 알기 집단 따돌림의 경험을 이해하고 예방(공감하기, 편지쓰기, 학급규칙 만들기) 집단 따돌림 대처법(거부하기, 도움청하기, 신고하기)
성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나의 몸 인식하기 타인의 성적 강요행동과 언어를 알고 대처하기 강제로 내 몸 만지는 일에 대해 대처 방법 알기 성폭력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기 성폭력 위험상황에서 도움 요청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알고 도움 요청하기	나를 소중히 여기기 성 예절 알고 성폭력에 대처하기 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알기 성폭력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타인의 성적 강요, 행동의 의미 및 유형 알고 보호하기 성폭력사례를 통해 실태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법 배우기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성폭력 예방을 통한 행동요령, 대처법 생각하기 또래 성폭력을 이해하고 예방과 대처하기 신고 접수 및 상담
	성매매	-	원조교제를 바로알고 나의 소중함 알기 나의 인권과 소중함 알기
아동 학대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 방법	아동학대의 이해 및 유형 아동학대의 신고 및 대처방법	아동학대를 이해하고 유형 알기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알기 아동학대 대처방법 알기 - 도움요청 대처 - 신고하기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 방법	생명의 의미알기 모두 특별한 존재임을 이해하기 나의 소중함, 특별함 알기	생명존중의 태도와 중요성 배우기 삶의 주인이 '나'임을 알기(자존감 향상) 임신, 출산과 생명 감사편지 쓰기 고민공유 상담을 통해 해소를 돕기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가정 폭력	가정 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가족의 소중함 알기 가족구성원의 역할 이해 사랑을 표현하기 가정폭력을 이해하고 유형 알기 가정폭력의 피해 증상알기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기능, 가족의 개념, 역할 알기 가정폭력(의 정의 및 유형알기-동영상 가족의 소중함, 고마움 표현 예화를 통한 가정폭력 사례이해 가정폭력의 피해 증상알기 가정폭력(아동학대)피해 징후 및 후유증 알기, 피해증상 토론하기 가정폭력 대처방법 알기- 도움요청, 신고, 보호기관 및 피해자 지원제도

중분류	소분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폭력	학교 폭력	학교폭력의 위험성 인식 학교폭력의 유형 및 현황	학교폭력의 심각성 이해하고 학교폭력 문제점 인식하여 예방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 인식 학교폭력 유형 및 구체적 사례이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이해
	언어/ 사이버 폭력	모바일 메신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하여 알고 예방하기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할극을 통해 예방법을 모색하기	언어/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및 문제점 이해하기 사이버폭력의 유형 및 사례 알기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UCC 만들기
	물리적 폭력	신체폭력의 위험성 인식하기 자신의 경험 또는 목격한 사례발표를 통한 신체폭력의 유형 이해 신체폭력 원인과 대처방법 이해 신체폭력 사례와 법적조치 이해 신체폭력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대처 및 예방법 생각하기 사례를 통해 금품갈취의 위험성 인식하기	신체폭력의 심각성 이해하기 청소년독립영화를 통해본 신체폭력의심각성 이해와 생각발표 실제 신체폭력 사례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예방하기 건강한 분노조절과 갈등해결법 공유하기 금품갈취 사례 찾아 유형별 사건 분석을 통해 심각성 이해하기 갈등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뉴스보도에 나타난 금품갈취 유형과 위험성 이해 자신의 경험이나 목격사례 이야기하고 토론하기 금품 갈취의 원인과 대책 모색하기 나비효과 이해와 비폭력평화학급 활동으로 예방의지 강화	-
	집단 따돌림	집단 따돌림의 유해성 이해하기 집단 따돌림의 다양한 유형을 알고 예방하기 집단 따돌림 예방하기 피해학생 이해하기 중재 및 상담 갈등해결 조력(토의)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 이해 집단 따돌림의 유형 및 사례 집단 따돌림 예방 학생자치법을 통해 갈등해결하기 집단 따돌림의 대처법 거부, 저장, 신고, 도움청하기 관련법률

성폭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성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예방하는 법을 배우기 성폭력 사례를 통해 문제점 알기 성폭력 사례별 대처 방법 알기 성폭력의 대처와 신고에 대해 알기(접수 및 상담)	나의 성인식(가치관) 점검 성폭력 유형을 알고 예방하기 데이트성폭력 이해하기 데이트성폭력의 유형과 사례 대상별, 상황별 성폭력예방과 대처 데이트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성폭력관련 법률 이해 및 토의하기 신고 접수 및 상담
	성매매	성매매의 이해와 실태, 피해 원조교제의 위험성 인식 신고접수 및 상담 성 상품화와 성매매를 알고 성적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기(사례) 성적 의사결정권 이해하기	성매매의 피해와 영향 이해하기 성매매의 구조와 유형 관련법률 이해하기 신고 접수 및 상담
아동 학대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방법	-	-
자살	자살 예방 및 대처 방법	자살 했을 때를 떠올리며 하루의 소중함 깨닫기 생명 팔찌 만들기 스트레스 점검 및 바람직한 해소	자아 존중감 향상을 통해 자신, 타인의 소중함 깨닫기 스트레스 극복방안 토론하기
가정 폭력	가정 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배우기 가정폭력의 특성 인식하기 가족규칙 만들기 통해 가정폭력 예방하기 가정폭력 보호기관 및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기	가정폭력의 발생과정 인식하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가해특징 인식하기 가정폭력대처법 이해 (동영상) 가정폭력 예방지침을 숙지하여 보호하기

라. 약물·사이버중독

약물·사이버 중독영역은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고 카페인 폐해 예방,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이 제시되고 있다.

<표 Ⅲ-11> 약물·사이버중독영역 내용체계도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약물 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약물에 대한 이해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약물에 대한 이해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 약물 오남용 위험성 인식 올바른 약물 복용법 숙지
	흡연 폐해 및 예방	간접흡연의 문제점 담배 속 유해성분 파악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알기	담배의 역사와 성분 이해 간접흡연의 해로운 점 인식 담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흡연권유시 거절방법 담배의 유해성 인식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인식 담배 연기 없는 환경 만들기
	음주 폐해 및 예방	알코올의 특성 이해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 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식	술의 유해성 인식 과음에 대한 경각심 고취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 술로 인한 피해 알기 음주 운전의 위험성 인식 금주 서약서 작성
	고카페 인식품 폐해, 예방	-	고카페인 식품 종류 파악 고카페인 식품섭취 예방방법 실천
사이버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인터넷 사용습관 파악 인터넷 게임 중독의 위험성 인식 인터넷 게임 예절 숙지 인터넷 건전 사용방안 모색	인터넷사용습관 파악 인터넷게임 중독 진단 인터넷게임 예절 숙지 자기조절능력 배양 인터넷게임 충동 극복방안 인터넷의 건전한 사용방안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 스마트폰의 중독성 인식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습관 형성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방안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습관 형성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방안

중분류	소분류	중학교	고등학교
약물 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약물의 특성 이해	약물과 마약류의 정의 및 종류 이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인식	청소년기 약물남용 동기 이해
		올바른 약물 복용법 숙지	약물중독예방방안 모색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 실천	약물 및 마약관련 법령 이해
		비만의 원인 및 비만으로 유발되는 질병 알기	비만의 원인 및 비만으로 유발되는 질병 알기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청소년기 올바른 약물 복용법 숙지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청소년기 올바른 약물 복용법 숙지
	흡연 폐해 및 예방	담배의 유해성 인식	담배의 유래와 역사, 청소년의 흡연실태 파악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담배의 유해성분 이해
		금연의 필요성 인식	금연관련 법규 및 정책 이해
		금연 실천 방안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음주 폐해 및 예방	음주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	음주와 암, 간의 상관성 인식
		음주에 대한 건전한 행동 형성	음주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술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습득	음주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만들기
	고카페인식품 폐해, 예방	고카페인 식품종류 이해	고카페인 식품종류 이해
		고카페인 식품의 위험성 인식	고카페인 식품의 부작용
		고카페인 식품 섭취 예방 방법 실천	고카페인 식품섭취 예방방법 실천
		고카페인 식품을 줄이는 방법 실천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실천방안
사이버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인터넷 사용습관 파악	인터넷사용습관 파악
		인터넷게임 중독 진단	인터넷게임중독 진단
		인터넷게임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인터넷게임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인터넷 게임외의 다양한 대안 활동 찾기	자기통제력 강화방안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 습관 형성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규칙 만들기 및 실천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방안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방안

마. 재난안전

재난안전교육은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시 안전 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 방법,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 방법, 각종 테러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 요령,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2> 재난안전영역 내용체계도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화재	화재발생	화재의 기초적인 개념 화재의 위험성 화재로 인한 피해가능성	화재의 기본개념 화재의 발생원인과 주요 특징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화재발생시 유의사항 화재발생시 대피장소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연기발생시 대처요령 화재유형별 대처요령 화재발생시 신고요령	화재발생시 기본 대피요령 화재발생시 신고 및 전파요령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소화기의 사용방법	소화기의 종류와 작동원리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방법
사회 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폭발과 붕괴 발생 시 기초적인 대피방법	폭발과 붕괴 발생 시 기초적인 대피방법 폭발과 붕괴발생시 구조요청 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	해외여행 시 안전요령 인질상황과 화학테러에 대한 대처요령
자연 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대처요령	홍수 발생 시 기초 적인 대처요령 태풍 발생 시 기초적인 대처요령	홍수예보청취 및 대피요령 태풍예보청취 및 대피요령
	지진, 대설, 한파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지진 발생 시 기초 적인 대처요령 대설/한파/폭염 발생 시 기초적인 대처요령	지진/낙뢰 발생 시 기초적인 대처요령 한파/폭설/황사 발생 시 기초적인 대처요령 ※ 각 학교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 선택 가능

중분류	소분류	중학교	고등학교
화재	화재발생	화재의 종류와 주요 특성 화재의 피해사례와 교훈에 대한 학습	-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화재발생시 대피 방법과 대피장소 화재발생시 신고 및 전파방법 화재유형별 기본 대처요령 학습	화재 장소에 따른 대피요령 화재 장소에 따른 신고요령 화재장소에 따른 대피와 신고 실습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방법	화재의 종류와 소화기 작동원리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방법
사회 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폭발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붕괴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폭발의 원인과 대처방법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테러의 개념과 대처요령 해외여행 시 안전 요령	각종 테러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방사능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자연 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대처요령	홍수/태풍에 대한 대처요령	
	지진, 대설, 한파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지진/해일에 대한 대처요령 폭염/가뭄에 대한 대처요령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대처요령 ※ 각 학교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 선택 가능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대설/한파 발생 시 대처요령 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바. 직업안전

직업안전교육은 직업 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 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에 대한 내용이 발달단계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표 Ⅲ-13〉 직업안전영역 내용체계도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직업 안전 의식	직업안전의식의 중요성	일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알기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도구와 장비 체험하기 일터에서의 안전의식의 의미와 필요성 일터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와 중요성
	직업안전문화	일터 안전시설 견학하기	일터 안전시설 견학하기 직업안전 문화의 필요성과 안전문화운동 직업안전 의식의 태도와 고취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발표회
산업 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일터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일터 안전의 중요성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표회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	-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	-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	-
직업 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	-
	정리정돈	-	-
	보호구 착용	-	-

중분류	소분류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 안전 의식	직업안전의식의 중요성	-	-
	직업안전문화	직업안전 문화의 필요성과 산업재해의 의미와 특성 산업재해의 유형과 사례별 발생현황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 -
산업 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	산업재해의 발생요인과 예방법 산업재해의 대책과 재해보상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의미와 특성 직업병의 종류와 증상	직업병의 진단과 발생요인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직업 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산업안전을 위한 과실이나 부주의 예방 산업안전을 위한 직장의 안전대책	고소작업의 의미와 재해유형 고소작업의 재해 사례와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와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의미와 내용
	정리정돈	작업장 시설 정리정돈의 필요성과 효과	작업장 정리정돈 방법 작업장의 안전기준
	보호구 착용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실습	보호구의 정의와 구비요건 작업장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

사. 응급처치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응급 처치 전 유의 사항 및 준비, 심폐 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기도 폐쇄, 지혈 및 상처 처리, 염좌 및 골절 처치, 화상 응급 처치, 갑작스런 상황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 학교급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표 Ⅲ-14> 응급처치영역 내용체계도

중분류	소분류	유치원	초등학교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 원칙	다쳤을 때 도움 요청하기 응급상황 알기와 이해하기	응급처치의 의미 알기 응급상황 알기와 이해하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알기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119 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사고 예방 수칙 이해하기	119 신고와 알림 사고 예방 수칙 알기 응급상황 시 행동 수칙 알기 환자의 상태 확인하기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손 씻기와 소독하기	손 씻기와 소독하기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이해하기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	자동제세동기사용법 이해하기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알기	기도폐쇄의 원인과 증상알기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하기
	지혈 및 상처처치	상처의 종류 이해하기 넘어져서 피가 날 때 대처하기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염좌 및 골절 처치	-	신체 부위 별 골절 처치하기
	화상응급처치	화상의 이해와 예방법 알기	화상의 종류와 증상알기 화상의 예방법과 응급처치
	갑작스런 상황에서 응급처치	모기, 개 등에 물렸을 때 햇볕에서 쓰러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야외활동에서 안전하기 추운 날 안전하게 행동하기 안전하게 운동하기	코피 날 때 등 일상생활에서의 응급처치 물놀이 등 야외활동 시 응급처치

중분류	소분류	중학교	고등학교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처치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응급상황 알고 대처하기	응급처치의 의미알기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상황 시 행동수칙 부상자나 환자의 상태 확인하기 이송의 필요성과 방법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부상자나 환자 상태확인 및 쇼크처치 이송의 필요성과 방법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알기	소독하기와 감염예방하기 선한사마리아인법 이해하기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알기 성인 심폐소생술 하기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하기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알기 성인 심폐소생술 하기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하기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알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알기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기도폐쇄의 정의와 증상 기도폐쇄 응급처치	기도폐쇄의 원인과 증상알기 기도폐쇄 응급처치
	지혈 및 상처처치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상처 보호하기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삼각건 사용법
	염좌 및 골절 처치	근골격계 손상예방하기 신체부위별 골절 처치하기	골절의 이해와 염좌 응급 처치 신체부위별 골절처치하기
	화상응급처치	화상 시 응급처치하기	화상 시 응급처치하기
	갑작스런 상황에서 응급처치	열사병, 일사병 응급처치 동상, 저체온증 응급처치 눈, 치아의 상처 등 일상생활응급처치 스포츠 활동 시 응급처치 물놀이 시 응급처치 산행 등 응급처치	열사병, 일사병 응급처치 동상, 저체온증 응급처치 스포츠 활동 시 응급처치 물놀이시 응급처치 벌에 쏘였을 때 등 일상생활 응급처치

Ⅳ. 학교안전교육의 고시(안) 구안

1.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안) 검토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안)을 구안·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기준(안) 마련을 위한 기본 원리와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학교안전교육 기준(안)이 전국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 모든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기준은 특정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안은 교육의 내용대상과 내용, 교육방법, 실시주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기준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교육의 내용들 중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학생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원리는 학교급별 학생의 특성과 각급학교 교원의 역할과 기능, 법적 및 제도적 특징, 안전교육의 개념, 안전교육의 원칙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 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준안 마련을 위한 기본 원리로는 전문성, 민주성, 규율성,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대응성을 들 수 있다.

첫째, 학교안전 교육 기준안 마련을 위한 전문성은 학교안전교육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장교원 등이 안전교육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장 교원이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별 표준안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지도할 경우 안전교육 지도에 요구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의 소유, 전문가적 가치판단, 전문적 분업의 원리 등을 기반으로 가르쳐야 한다. 현장 교원들은 안전교육지도에 요구되는 안전 교육 관련 지식과 기술의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교직 직무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생의 안전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해야 함을 뜻한다. 교원의 전문적인 가치 판단은 안전교육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기반으로 학생의 안전교육지도 등의 각종 직무를 처리하는데 자율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야 함을 뜻한다. 전문적 분업은 학교구성원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안전교육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적인 판단을 위한 업무의 분화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 교육기준의 민주성은 현장 교원들이 안전교육지도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 존중,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핵심 가

치를 실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교원의 안전교육지도와 관련한 민주성에는 참여와 자율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출발함을 의미한다. 참여는 현장 교원이 학교안전 교육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자율성은 학교 안전교육지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원의 학생 안전교육지도 권한이 특정 교원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직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으로 분산되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공정성은 교원이 학생을 안전교육 지도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안전교육의 규율성은 학교안전교육 지도 활동이 각종 안전교육 관련 법규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합법성과 규범성, 책무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법성은 교원은 학교조직구성원으로서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규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규범성은 교원의 안전교육활동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부합되게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책무성은 교원에게 주어진 안전교육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넷째, 학교안전교육의 효과성은 교원의 학교안전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조직목적 달성, 개인목적 달성, 사회적 목적 달성을 내재한다.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한 조직의 목적 달성은 학교구성원으로서 교원에게 부여된 안전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목적 달성은 개별 교원으로 추구하는 안전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목적 달성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교원이 달성해 주기를 바라는 안전교육의 목표를 뜻한다. 또한 학교안전교육은 학교가 처한 교육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물론 학교의 규모 등이 매우 달라 하나의 틀로 재단하기가 힘들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학교안전교육이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학교안전교육의 대응성은 현장 교원이 학교교육 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의 필요와 욕구, 선호와 가치 등에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교원의 존재 이유가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현장 교원들이 안전교육에 관한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의 안전교육적 요구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상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교직환경에 보면, 현장 교원이 학교안전교육 지도 활동에 능동적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교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교원의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전문 역량이 구비된다면 학교안전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실현가능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학교안전교육 기준안 마련의 기본 원리들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영역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교육기준안 작성 과정에 있어서 학교안전교육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타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과 교육부 지침 등을 기반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교육기준안을 <표 Ⅳ-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Ⅳ-3>의 실시주기(교육횟수)의 1안은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의 발표와 함께 제시된 연간 학년 기준의 총 51차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현재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은 영역별 시수는 학교 자율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학년 기준으로 총 51차시의 지도안 및 워크북을 제공한다. 기준안의 시수는 최소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학년별 총 54시간 내외를 권장하고 있으며,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연간 68시간의 안전생활 교과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2안은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서 제시한 학생 발달단계(유아~고교)를 바탕으로 한 최소 이수 기준이다. 안전교육 표준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르므로, 학생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7개 영역에 대해 동일한 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 표준안에서는 초등에서는 생활안전, 폭력·신변안전 영역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 시 직업안전을 강화한 점, 둘째,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에 의한 2017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에 '안전한 생활'이 신설되었으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한 점,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진행된 양희산 외(2012)의 연구에서 산출된 학교급별 학교안전교육영역별 비중과 중요도를 기반으로 발달단계별 안전교육의 시수를 설정하였다.

특히 양희산 외(2012)의 연구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영역구분과 영역이 동일하며, 문헌고찰 결과를 기반으로 1,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급별 안전교육 영영별 비중을 <표 Ⅳ-1>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표 Ⅳ-1>의 중앙값을 학교급별 영역별 중요도로 <표 Ⅳ-2>과 같이 제시하였다. 대푯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평균이지만, 극단적으로 큰 값이나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으므로 대푯값으로 중앙값을 사용하며, 양희산 외(2012)의 연구는 응답범위가 0-100이므로 대푯값으로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2안은 양희산 외(2012)의 학교급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대분류의 영역별 비중의 중앙값을 전체를 100으로 놓고 백분율을 산출하여 시수를 재산출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의 실시주기 및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있어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영역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영역의 시수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다.

<표 Ⅳ-1> 학교급(학령별)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대분류의 영역별 비중

구분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1-2학년	3-4학년	5-6학년		
생활안전	최소	10	10	0	0	0	0
	중앙값	25	25	20	20	15	15
	평균	27	25	20	19	15	14
	최대	40	40	30	30	25	25
교통안전	최소	10	10	10	10	5	0
	중앙값	25	22.5	20	20	15	10
	평균	25	24	21	18	16	14
	최대	50	45	40	40	40	40
폭력 및 신변안전	최소	5	10	10	10	15	10
	중앙값	15	20	20	20	20	20
	평균	16	18	20	21	23	22
	최대	30	30	50	30	35	35
약·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최소	0	5	5	5	5	5
	중앙값	10	10	15	20	20	20
	평균	11	13	15	18	20	20
	최대	25	20	25	50	50	50
재난안전	최소	0	0	0	0	0	0
	중앙값	10	10	10	10	10	10
	평균	10	10	10	9	9	10
	최대	25	20	25	20	20	20
직업안전	최소	0	0	0	0	0	0
	중앙값	5	5	5	5	5	10
	평균	4	4	5	5	6	9
	최대	10	10	15	15	20	30
응급처치	최소	0	0	0	0	5	5
	중앙값	5	5	10	10	10	10
	평균	7	7	9	9	11	12
	최대	25	25	25	25	25	25

출처: 양희산 외(2012). 115쪽.

<표 Ⅳ-2> 학교급별 학교안전교육영역의 중요도

단위: 중앙값(응답범위 0-100)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1-2학년	3-4학년	5-6학년		
생활안전	25	25	20	20	15	15
교통안전	25	22.5	20	20	15	10
폭력 및 신변안전	15	20	20	20	20	20
약·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10	10	15	20	20	20
재난안전	10	10	10	10	10	10
직업안전	5	5	5	5	5	10
응급처치	5	5	10	10	10	10

출처: 양희산 외(2012). 142쪽.

교육내용의 1안은 아동복지법 교육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1안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 체계도의 소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중학교에는 학습 내용이 있으나, 고등학교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 1안의 체계에는 맞지 않는 면도 있다.

또한 2안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 체계도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명명한 것으로 2안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 교통안전의 경우 초등학교는 '자동차의 이해, 안전띠 매기, 어린이 통학버스 등' 학습 세부 내용이 많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안전띠 매기' 밖에 없어 내용 명이 '안전 띠 매기'로 하기는 문제가 있어 '교통사고와 방지대책'으로 하는 등 세부내용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표 Ⅳ-3>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에 따른 교육기준(안)

교육기준(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 및 신변안전 교육	약물·사이버 중독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1안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6개월에 3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안	유	11	11	10	5	10	2	2
		초	10	10	10	6	10	2	3
		중	8	8	11	11	5	3	5
		고	8	5	11	11	5	6	5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3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교육 내용 (1안)	초등학교 취학전	1.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2.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3. 학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및 전기 감전 조심하기 4. 놀이기구, 탈것 안전하게 이용하기 5.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관리 5.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몸에 해로운 약물의 위험성 알기 2.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일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견학하기 3.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2.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초등학교	1. 교실, 가정, 등하굣길, 공공장소의 시설 안전하게 사용하기 2. 장난감, 학용품, 전자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3. 식품첨가물 안전 및 식중독 예방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1. 학교폭력의 예방법과 대처법 2. 성폭력의 예방법과 대처법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처법 4. 생명존중의 태도와 중요성 인식 5. 가정폭력의 예방	1.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2.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 3.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4.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직업안전의식의 중요성 2. 직업안전 의식 고취 3.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1.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2.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이해하기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고, 처치하기

		4. 실험, 실습, 공작 활동 시 안전수칙 및 도구사용법 5.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하게 하기 6. 유괴,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법		및 대처법	의 원인 알기 5.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중·고등학교	1. 다중 밀집시설 이용시 안전 및 에티켓 2. 가정 및 교내의 소방시설 사용법 익히기 3. 가공식품 첨가물의 유해성 및 안전한 식품 보관법 4. 실험, 실습 안전 5. 체육 및 여가활동 안전 6. 공산품 안전 관리 제도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 대책	1. 학교폭력, 성폭력, 학대, 가정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각종 폭력범죄 신고요령 및 지원제도 활용하기 4. 자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 5.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 4.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재난 발생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 직업 안전 의식 2.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3.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4. 직업 안전의 예방 및 관리 5.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6.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1. 응급처치의 이해와 필요성 2.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이해하기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고, 처치하기 4.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해하기 5. 삼각건 사용법
교육 내용 (2안)	초등학교 취학전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시설 이용하기 2.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1. 학교폭력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2. 언어/사이버 폭력의 의미와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2.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3. 술이 건	1. 화재의 개념과 위험성 2. 화재발생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1. 일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견학하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요청하기 2.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3. 놀이기구, 탈것, 안전하게 이용하기 및 야외체험학습 안전하게 다녀오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4.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관리 5.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6.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7. 대중교통 이용안전 수칙	대처방법 3. 신체폭력의 의미와 대처방법 및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4. 집단따돌림의 대처·예방법과 도움요청 방법 알기 5. 내 몸의 소중함과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 6. 아동학대의 신고 및 대처방법 7. 나의 소중함, 특별함 알기 8. 가족의 소중함 알고,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강에 미치는 영향 4.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 및 건전한 인터넷 사용법 5.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습관	3. 소화기의 사용방법 4. 폭발과 붕괴 발생시 기초적인 대피방법 5. 홍수·태풍 발생시 기초적인 대처법 6. 지진, 대설, 한파, 폭염 시 기초적인 대처법	3.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3. 손씻기와 소독하기 4.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알기 5. 상처의 종류 이해하기 및 넘어져서 피가 날 때 대처하기 6. 화상의 이해와 예방법 알기 7. 일상생활 중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기
	초등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 활동 및 야외활동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사각지대 내 외륜차 4.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관리 5.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6. 대중교통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언어/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알고 예방 및 대처하기 3. 신체폭력을 알고 그에 대한 피해와 예방대책 알기 4. 집단 따돌림의 유형 및 사례 알고, 대처방법 알기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2. 담배의 유해성 인식 및 흡연 권유시 대처법 3. 술의 유해성 인식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4. 고카페인 식품의 종류 및 섭취 예방법 5. 인터넷 자기조절	1. 화재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특징 2. 화재발생시 기본대피요령 및 신고, 전파요령 3.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방법 4. 폭발과 붕괴 발생시 기초적인 대피방법 및 구조요청 방법 5. 해외 여행 시 안전	1. 직업안전의식의 중요성 2. 직업안전 의식 고취 3.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1. 응급처치 상황, 의미, 중요성 알기 2. 119신고와 응급 상황 시 행동요령 알기 3. 손 씻기와 소독하기 4.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이해하기 5. 자동제세동기사용법 이해하기 6. 기도폐쇄의 원인,

		대처		5.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6. 원조교제를 바로 알고, 나의 인권과 소중함 알기 7. 아동학대 유형 및 대처방안 8. 생명존중의 태도와 중요성 9.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폭력 대처방안	능력 배양 및 충동 극복방안 6.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습관 형성	요령 및 각종 테러에 대한 대처요령 6. 홍수·태풍예보 청취 및 대피요령 7.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발생시 대처요령		증상 알기 및 응급처치 하기 7.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8. 신체부위별 골절 처치하기 9. 화상의 종류, 증상, 예방법과 응급처치 10. 일상생활 및 야외활동에서 응급처치
	중학교	1. 공공시설 이용시 안전과 에티켓 및 소방시설 사용법 익히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및 가공첨가물의 유해성 3. 실험·실습실 안전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중요성과 바른 사용법 4. 안전한 체육·여가활동 및 상해 시 대처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3.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이해 4. 자동차 사고 예방 5. 대중교통이용 안전 수칙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 2. 모바일 메신저 바르게 사용하기 및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및 예방법 인식 3. 금품갈취의 위험성 인식 및 비폭력평화학급 활동으로 예방의지 강화 4. 집단따돌림 예방과 중재 및 갈등해결 조력하기 5. 성폭력 대처 예방 및 대처법 6. 성매매, 원조교재의 위험성 인식과 성적 의사결정권 이해하기	1.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 실천 및 비만의 원인 및 예방법 2.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금연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3. 음주에 대한 건강한 행동 형성 4. 고카페인 식품 섭취를 줄이는 방법 실천 5.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과 대안활동 찾기 6.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방안	1. 화재의 종류와 특성 2.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및 화재유형별 대처요령 3.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4. 폭발 및 붕괴 시 대처방법 5. 테러의 개념과 대처요령 및 해외 여행시 안전 요령 6. 홍수·태풍에 대한 대처요령 7. 지진, 해일, 폭염, 가뭄,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요령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현황 3. 직업병의 의미, 종류, 특성 4. 산업안전을 위한 직장의 안전 대책 5. 작업장 시설 정리정돈의 필요성과 효과 6.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	1. 응급상황 알고 대처하기 2. 응급상황 시 행동수칙 3.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4. 성인, 소아, 영아의 심폐소생술 5.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6.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7. 지혈 및 상처처치 8. 염좌 및 골절 처치 9. 화상 시 응급처치 10.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7.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8.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법과 가정폭력 보호기관 및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법				
	고등학교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법 2. 실험·실습 안전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 3. 안전한 체육 및 여가활동 및 상해시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3. 자동차의 특성 이해 4.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5. 대중교통이용 안전 수칙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이해 2.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 실천 3. 건강한 분노조절과 갈등해결법 4. 집단 따돌림 예방 학생자치법과 갈등해결하기 5. 데이트 성폭력을 포함한 대상별, 상황별 성폭력 예방과 대처법 6. 성매매의 구조와 유형 및 관련법률과 신고·상담법 7.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자신, 타인의 소중함 깨닫기 8. 가정폭력 예방지침을 숙지하여 보호	1. 마약류 폐해와 예방 및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청소년기 올바른 약물 복용법 숙지 2. 금연관련 법규·정책 이해 및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3. 음주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만들기 4. 고카페인 식품섭취 예방 및 건강한 식습관 실천 5. 인테넷 게임 중독 자기통제력 강화 6.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규칙 만들기 및 실천	1. 화재 장소에 따른 안전 수칙 2. 화재의 종류와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3. 폭발·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4. 각종 테러, 방사능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5.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발생시 대처 요령	1.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 2.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3. 직업병의 진단과 발생요인 4.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5. 산업재해 관리 6.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기준 7. 보호구 착용	1.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2.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3. 응급처치전 유의사항 및 준비 4. 대상에 따른 심폐소생술 5.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6. 기도폐쇄 응급처치 7. 지혈과 상처처치 및 삼각건 사용법 8. 염좌 및 골절 처치 9. 화상시 응급처치 10.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직장견학 또는 직업체험)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이 밖에 교육방법은 아동복지법의 교육기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은 학교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시행령 제 7조 1항을 기반으로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학기별로 학기말에 1회씩 총 2회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고시(안)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한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 분석, 학교안전 관련 참고문헌과 선행연구 결과 및 단위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정책 내용 분석, 그 밖의 현장 교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고시(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5-000호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3.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3조(학교안전교육의 이수시간)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별표 1】에 따른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수에 맞추어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학교보건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소방기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사 교육과 통합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학교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및 강사) ①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학교안전교육은 이론실습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소속 학교의 교원
2. 규칙 제2조 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상담사 등 해당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5조(학교안전교육 실적에 대한 보고)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대상·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당해 학년도 학교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교육감(제2조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연도 2월 14일까지 학교안전교육관련 학년별 대상별 교육횟수, 교육시간, 강사 및 교육실적을 관할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영역별 · 학교급별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주기 및 총 시간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교육	약물 ·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유치원	11	11	10	5	10	2	2
초등학교	10	10	10	6	10	2	3
중학교	8	8	11	11	5	3	5
고등학교	8	5	11	11	5	6	5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3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비고: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별표 2】

영역별 · 학교급별 학교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교육	약물 ·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육내용	유치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시설 이용하기 2.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3. 놀이기구, 탈것, 안전하게 이용하기 및 야외 체험학습 안전하게 다녀오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4.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관리 5.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6.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7. 대중교통 이용안전 수칙	1. 학교폭력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2. 언어/사이버 폭력의 의미와 대처방법 3. 신체폭력의 의미와 대처방법 및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4. 집단따돌림의 대처·예방법과 도움요청 방법 알기 5. 내 몸의 소중함과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 6. 아동학대의 신고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2.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3.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4.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 및 건전한 인터넷 사용법 5.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습관	1. 화재의 개념과 위험성 2. 화재발생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3. 소화기의 사용방법 4. 폭발과 붕괴 발생시 기초적인 대피방법 5. 홍수·태풍 발생 시 기초적인 대처법 6. 지진, 대설, 한파, 폭염 시 기초적인 대처법	1. 일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견학하기 3.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요청하기 2.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3. 손 씻기와 소독하기 4.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알기 5. 상처의 종류 이해하기 및 넘어져서 피가 날 때 대처하기 6. 화상의 이해와 예방법 알기 7. 일상생활 중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기

			및 대처방법 7. 나의 소중함, 특별함 알기 8. 가족의 소중함 알고,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초등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안전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 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사각지대 내 외륜차 4.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관리 5.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6. 대중교통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언어/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알고 예방 및 대처하기 3. 신체폭력을 알고 그에 대한 피해와 예방대책 알기 4. 집단 따돌림의 유형 및 사례 알고, 대처방법 알기 5.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6. 원조교제를 바로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2. 담배의 유해성 인식 및 흡연 권유시 대처법 3. 술의 유해성 인식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4. 고카페인 식품의 종류 및 섭취 예방법 5. 인터넷 자기조절 능력 배양 및 충동 극복방안 6. 스마트폰의 건강	1. 화재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특징 2. 화재발생시 기본대피요령 및 신고, 전파요령 3.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방법 4. 폭발과 붕괴 발생시 기초적인 대피방법 및 구조요청 방법 5. 해외 여행 시 안전요령 및 각종 테러에 대한 대처요령 6. 홍수·태	1. 직업안전의식의 중요성 2. 직업안전 의식 고취 3.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1. 응급처치 상황, 의미, 중요성 알기 2. 119신고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알기 3. 손 씻기와 소독하기 4.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이해하기 5. 자동제세동기사용법 이해하기 6. 기도폐쇄의 원인, 증상 알기 및 응급처치 하기 7. 상처의

				알고, 나의 인권과 소중함 알기 7. 아동학대 유형 및 대처방안 8. 생명존중의 태도와 중요성 9.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폭력 대처방안	한 사용습관 형성	풍예보 청취 및 대피요령 7.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종류와 응급처치하기 8. 신체부위별 골절 처치하기 9. 화상의 종류, 증상, 예방법과 응급처치 10. 일상생활 및 야외활동에서 응급처치
	중학교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및 소방시설 사용법 익히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및 가공 첨가물의 유해성 3. 실험·실습실 안전수칙 이해 및 보호 장구의 중요성과 바른 사용법 4. 안전한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3.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이해 4. 자동차 사고 예방 5. 대중교통이용 안전 수칙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 2. 모바일 메신저 바르게 사용하기 및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및 예방법 인식 3. 금품갈취의 위험성 인식 및 비폭력평화학급 활동으로 예방의지 강화 4. 집단따돌림 예방	1.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 실천 및 비만의 원인 및 예방법 2.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금연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3. 음주에 대한 건강한 행동 형성 4. 고카페인 식품 섭취를 줄이는 방법 실천	1. 화재의 종류와 특성 2.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및 화재유형별 대처요령 3.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4. 폭발 및 붕괴 시 대처방법 5. 테러의 개념과 대처요령 및 해외여행 시 안전 요령 6. 홍수·태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현황 3. 직업병의 의미, 종류, 특성 4. 산업안전을 위한 직장의 안전 대책 5. 작업장 시설 정리정돈의 필요성과 효과 6. 안전장	1. 응급상황 알고 대처하기 2. 응급상황 시 행동수칙 3.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4. 성인, 소아, 영아의 심폐소생술 5.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6.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7. 지혈 및 상처처치

		체육·여가 활동 및 상해 시 대처 방법		과 중재 및 갈등해결 조력하기 5. 성폭력 대처 예방 및 대처법 6. 성매매, 원조교재의 위험성 인식과 성적 의사결정권 이해하기 7.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8.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법과 가정폭력 보호기관 및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법	5.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과 대안활동 찾기 6.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방안	풍에 대한 대처요령 7. 지진, 해일, 폭염, 가뭄,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요령	비의 올바른 사용	8. 염좌 및 골절 처치 9. 화상시 응급처치 10.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고등학교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 2. 실험·실습 안전수칙 이해 및 보호 장구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3. 자동차의 특성 이해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이해 2.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 실천 3. 건강한 분노조절과 갈등해결법	1. 마약류 폐해와 예방 및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청소년기 올바른 약물 복용법 숙지 2. 금연관련 법규·정	1. 화재 장소에 따른 안전 수칙 2. 화재의 종류와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3. 폭발·붕괴의 원인과 대처방	1.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 2.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3. 직업병의 진단과 발생요인 4. 직업병의 예방과	1.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2.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3.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의 바른 사용 3. 안전한 체육 및 여가활동 및 상해 시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	4. 교통사고와 방지 대책 5. 대중교통이용 안전 수칙	4. 집단 따돌림 예방 학생자치법과 갈등해결하기 5. 데이트 성폭력을 포함한 대상별, 상황별 성폭력 예방과 대처법 6. 성매매의 구조와 유형 및 관련 법률과 신고·상담법 7.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자신, 타인의 소중함 깨닫기 8. 가정폭력 예방지침을 숙지하여 보호하기	책 이해 및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3. 음주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만들기 4. 고카페인 식품섭취 예방 및 건강한 식습관 실천 5. 인테넷 게임 중독 자기통제력 강화 6.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규칙 만들기 및 실천	법 4. 각종 테러, 방사능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5.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발생 시 대처 요령	대책 5. 산업재해 관리 6.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기준 7. 보호구 착용	4. 대상에 따른 심폐소생술 5.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6. 기도폐쇄 응급처치 7. 지혈과 상처처치 및 삼각건 사용법 8. 염좌 및 골절 처치 9. 화상시 응급처치 10.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

	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교육 4. 사례 분석		장학습 4. 사례 분석	장학습(직장견학 또는 직업체험) 4. 사례 분석	장학습 4. 사례 분석

◆ 학교안전교육실시 실적보고 서식(대상: 학생)

학교급	학교명	대상(학생수)	안전교육 7대 영역		교내							교외						
					교육횟수		교육시간		외부강사자격구분	장소	만족도(100%)	교육횟수		교육시간		외부강사자격구분	장소	만족도
					교사	외부강사	교사	외부강사				교사	외부강사	교사	외부강사			
			생활안전	정규교과														
				창체활동														
			교통안전	정규교과														
				창체활동														
			폭력예방및신변안전	정규교과														
				창체활동														
			약물·사이버중독예방	정규교과														
				창체활동														
			재난	정규														

			안전	교과														
				창체활동														
			직업안전	정규교과														
				창체활동														
			응급처치	정규교과														
				창체활동														

		기타		①	②	③	④	⑤		번호 기록
		1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주된 방법(2가지 선택)	강의(시청각 포함)	교내 체험학습(훈련 포함)	토의·토론	현장견학(체험)			
		2	안전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주체 (2가지 선택)	교장·교감	교사	외부전문가 초청	외부 전문기관 위탁			
		3	안전교육 외부전문가 초청 시 주로 활용하는 기관(개인 및 단체 포함) (2가지 선택)	시·군·구청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학교안전공제회		

* 교육 횟수와 교육시간은 강사(교사, 외부강사)로 구분

* 초등학교 1시간 40분, 중학교 1시간 45분, 고등학교 1시간 50분으로 산출함

* 외부강사자격 구분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고시(안) 제4호 ②항의 1~4호 중 해당하는 것 작성

* 기타: 우선순위로 순서로 2가지 선택

◆ 학교안전교육실시 실적보고 서식(대상: 교직원)

학교급	학교명	교직원수	교내 연수							교외 연수						
			과정수	참여자수	총시간	외부강사자격구분	장소	연수 형태 (원격/출석)	연수 방법	과정수	참여자수	총시간	외부강사자격구분	장소	연수 형태 (원격/출석)	연수 방법

* 교내 연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1)안전교육 관련 연수로, 2)연수 자료가 있고, 3)구체적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공지가 된 것임

* 교외연수: 교육부, 시·도 교육청 연수원, 공공기관과 교육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학원, 특강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정보화 관련 내용을 연수로 공식적인 기록(교육청 등록)에 근거

* 외부강사자격 구분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고시(안) 제4호 ②항의 1~4호 중 해당하는 것 작성

* 연수방법은 강의(시청각 포함)/ 교내 체험(훈련)/ 토의·토론/ 현장견학(체험) 중 택 1

* 개별교사 기록 방법

예시) A교사가 30시간 / 15시간 / 7시간 과정을 연수한 경우

- 과정 수: 3
- 참여자수: 1
- 총시간: 30+15+7=52

* 담당교사 통합 입력 방법

예시)

개별 교사	과정수	시간
A교사	2	30시간
B교사	3	80시간
C교사	2	60시간

- 과정 수:2+3+2=7
- 참여자수:1(A)+1(B)+1(C)=3명
- 총시간:30+80+60=170시간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내실 있게 적용·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검토, 전문가 협의회, 현장 교원 면담, 단위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정부의 안전교육 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학교안전 교육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별 교육표준안을 마련하며, 학교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탐색하였다.

단위학교의 현장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현행 단위학교의 안전교육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명하달식 정책 추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 안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환경 미비, 안전교육 관련 교원연수 부족, 여러 법령과 지침의 안전교육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교육 시간을 과도하게 산출해야 함으로써 교과 내용과 안전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저해,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학교안전 교육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마련한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의 교육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주기(교육횟수)는 학교 안전교육 7대영역 표준안의 발표와 함께 제시된 연간 학년 기준의 총 51차시를 기준으로 하여, 1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28조 교육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급과 무관하게 교육시간을 제시하였다. 2안은 양희산 외(2012)의 연구의 학교급별 학교안전교육영역별 비중과 중요도를 기반으로 발달단계별 안전교육의 시수를 설정하였다. 학생들은 성장단계에 따라 지식수준과 인지·행동능력 등 학습능력이 상이하기에 이 연구의 2안이 더 적합해 보인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기간은 6년으로 학년군별 발달단계에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초등학교의 안전교육7대 영역별 시수 또한 학년군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Ⅴ-1>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의 교육기준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교육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유치원	11	11	10	5	10	2	2
초등학교	10	10	10	6	10	2	3
중학교	8	8	11	11	5	3	5
고등학교	8	5	11	11	5	6	5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2회 이상	6개월에 3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둘째, 교육내용의 1안은 아동복지법 교육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 체계도의 소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중학교에는 학습 내용이 있으나, 고등학교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 1안의 체계에는 맞지 않는 면도 있다. 2안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 체계도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명명한 것으로 예를 들어 교통안전의 경우 초등학교는 '자동차의 이해, 안전띠 매기, 어린이 통학버스 등' 학습 세부 내용이 많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안전띠 매기' 밖에 없어 내용명이 '안전 띠 매기'로 하기는 문제가 있어 '교통사고와 방지대책'으로 하는 등 세부내용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세부내용이 학교급에 적절하지 않게 구성된 면이 일부 있어 향후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개선과 함께 2안의 체계화가 더 적합해 보인다.

셋째, 학교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및 강사와 학교안전교육 실적 보고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2. 제언

단위학교에서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교육기준안이 적용되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과제들이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

가. 학교안전교육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 내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교육 관련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에서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학교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들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그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곡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 및 방지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을 모두 합해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 7시간을 더해 연간 51시간씩 안전관련 교육을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있다.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기에 단위학교에서는 여러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안전교육 시간을 과도하게 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안전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체계화를 통한 안전교육의 기준마련 및 교과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적 수준에서 교육횟수, 시간, 강사, 보고방법 등을 명료화하고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지원의 내용들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법규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수준의 성취기준 확립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성취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은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각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정선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단위학교에서는 교과,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교과 특성에 알맞게 선정, 배열되어 있는 핵심적인 개념, 아이디어, 지식, 원리, 기능, 가치 규범, 주제, 제제, 소재를 보다 더 상세한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안전교육에도 학교급, 학교군, 안전교육 7대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제시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응급처치 교육과 도로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험을 통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며, 과정 수료여부는 중학교 및 고교 졸업자격 시험결과에 반영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독일 초등학교의 경우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수영수업과 자전거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초등학교에 다닌 사람 모두는 기본적인 수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전거를 못타는 경우가 없다(이덕란,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전거 타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자전거 타기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해 교통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4학년들을 대상으로 8시간의 이론과 4시간의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영교육의 증진을 위해 독일 전역에 수영코스 자격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해오고 있고, 수영교육을 통해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영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박효정·유선영, 2015).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필수성취기준을 제시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필수학습요소의 성취기준에 도달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교육당국이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이다.

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정부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2015년 4월 3일 서울, 강원의 2개 지역 3개의 기존 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학교'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종합 안전 체험 시설은 서울에 3개, 부산 1개, 대구 1개, 대전 1개, 강원 1개, 충북 2개, 전북 1개 총 10개소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위학교에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해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험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사가 안전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해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실습 장비의 부족으로 학교에서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단위학교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중심의 안전교육이 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박효정·유선영, 2015).

독일의 경우 학교가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주 교육부, 학교청 뿐만 아니라 학부모, 경찰, 교통 관련 기업, 협회, 연구소, 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학교는 자전거 교육이나 교통교육을 실시할 때 담당 지역 경찰과 필수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사고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 사고보험에서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지침 및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학교를 지원하거나 직접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덕란, 2015).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이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협력 없이는 안전교육이 단편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사회의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교사연수 강화 및 전문적인 학교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교사의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는 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통해 교원 임용 및 승진 시에 교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예정인 '(가칭)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교원 43만 명을 대상으로 2014년~2017년까지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하고, 신규교원 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에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과 교원의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 연수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사를 준안전요원화 한다고 하지만 15시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철(2014)은 교사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학교현장의 안전교육을 통해 교사로부터의 혁신적인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이 개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상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할 것이며, 수준 높은 안전교육 매뉴얼의 적용과 현실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체적인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에 화재, 지진, 보안, 교통 등 주요 안전영역별로 전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짧은 연수만으로 교사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위한 체제가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안전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적인 연수 내용을 개발하여 점차 높은 수준의 연수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안전교육 담당자로 성장해 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양승실 외(2015)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 및 지도를 위한 인적자원 구축과 교직원이 당당하게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교 안전지도사의 직무 분석, 자격 설계 등이 이루어졌다. 향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교직원 연수의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학교안전교육 시간과 교육내용 등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

단위학교가 학교안전교육을 수립 및 실행함에 있어서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 규정의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로 달라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고려하여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 및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안전 교육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이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률 중에서 학교 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사고(안전관리),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교육, 학교폭력(성폭력 등), 재난안전, 체험활동의 구체적인 시간과 횟수, 그리고 내용 등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교육, 학교폭력(성폭력 등), 재난안전, 실종·유괴의 내용과 달라 학교현장에서 무엇을 우선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안전교육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 학생교육 실천에 일관성 등에서 시행착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내용을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할 실정이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14).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경기도교육청(2015). 7대 안전교육 표준안 학교교육계획 반영 방안.

공배완·안황권(2009)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치안행정논집, 6(2), 279-298.

곽은복(2008). 아동안전관리. 서울: 학지사.

교육과학기술부(2013).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2014).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교육부보도자료, 2014.11.11.

교육부(2014).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안).

교육부(2014.11). 2015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 방향.

교육부(2015). 「안전체험학교」 시범 실시로 체험위주 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2015.4.3.

교육부(2015). 부처 간 협업(교육부-국민안전처)으로 체험 중심 안전연수 실시. 교육부,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2015.7.6.

교육부(2015).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영역 표준안' 발표. 교육부보도자료, 2015.2.26.

교육부(2015).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발표 보도자료.

권동택 외(2012). 교원양성, 임용, 연수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충청북도교육청.

김경회・정혜선・전제상・김숙이(2015). 교원 양성・연수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교원 양성·연수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기본과제 2014-03.

김동희・김한수(2011). CM단장 핵심역량 발굴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6), 93-100.

김미주·문외식(200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안전 교육을 위한 웹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한국정보교육학회.

김민준·윤영도·강경식(2013) 안전교육을 위한 미디어 개발 현황 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15(1), 169-176.

김승옥·이정수·이경옥(2008) 인터넷 안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인터넷 안전교육 실태. 한국교원연구, 25(1), 191-208.

김신정(2010).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간호학회, 16(1), 20-29.

김신정·김성희(2009) 초등학생을 위한 교사용 안전교육 지침서 개발. 아동간호학회, 15(2), 145-154.

김신정·김예영·김성희·박현정·강경아(2013).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교사의 안전교육 요구도. 한국간호교육학회. 19(2). 137-150.

김은성·정지범·안혁근(2009).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김인정(2012). 보육시설 안전교육・안전사고 실태와 담임교사들의 안전교육 범위와 방법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4(4), 125-136.

김탁희·이명선(2001).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 분석 연구. 보건교육증진학회지, 18(2), 45-63.

나채준(201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5). 교원승진제도와 연수제도 개선안에 대한 쟁점 사항의 재분석과 대안.

머니투데이(2015). 교육부 '엉터리' 안전교육, 표준안 출처가 '맛집 블로그'. 신문보도, 2015.4.14.

박경민 외 (2010).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지식 태도 및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회학지, 21(2), 220-228.

박성철(2014). 주요 선진국의 안전교육 정책과 운영실태. 교육개발 2014 가을, 34-39.

박재희·김소연·이규녀(2013).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터한 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85-203.

박종필 · 엄준용 · 가신현(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계 연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9(2), 125-156.

박종필 · 엄준용 · 가신현(2013). 2011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계 맞춤형 연수제도 운영성과 및 발전 방향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0(2), 329-358.

박철희 · 최화숙 · 장인실(2012).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연수체제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475-495.

박효정·유선영(2015). 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내실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POSITION PAPER 2015, 12(5).

서울시교육청(2014). 학생안전매뉴얼.

세계일보(2015). 지침강화에도… 학교안전교육 걸음마수준. 신문보도, 2015.4.13.

손경수(2005). 교원연수체제 개선 후속조치 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손희권·이성기·김숙이(2014). 학교 내・외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통합 법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신현석 · 오찬숙(2013). 교원 현직연수 연구동향 분석: 연구 영역, 주제 및 연구방법을 중심

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0(3), 431-462.
심한수(2015). 학교 안전의 주요 정책.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학교안전연구소 콜로키움 자료집.
안전행정부(2014).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양승실·이동욱·장선주·박혜진·정필운·이남승(2015). 학교 안전 구현을 위한 안전지도사 직무와 자격 설계. 한국교육개발원. POSITION PAPER 2015, 12(6).
양희산·박남수·성근석·박영일·이남승·김태용(2012). 학교급별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염영희 외(2014). 간호관리학. 수문사.
오효선·홍혜경 (2013)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41-69.
원소연(2013).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분야 비교 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2011). 재난안전분야 지방조직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규은·정혜선(2012).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 체계 개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2), 175-191.
이규은·정혜선(2013). 공업고등학교 안전교육 내용 체계 개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6(3), 169-183.
이덕난(2014). 일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동향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The Eduforum August 254호. 28~33.
이덕난(2015). OECE 주요국의 유·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이동욱(2015). 학교 안전지도사 직무분석과 자격 설계.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제4회 학교안전연구소 콜로키움 자료집.
이명선(2008). 학교 안전교육 실태와 과제. 서울교육, 52-56.
이승철·김수장(2012). 교사의 안전교육 및 사고 경험이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창희(2010).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 박사논문.
이현주 외(2002).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기본과제.
임연기(2013). 한국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직과목 교육에 대한 성찰과 미래방향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0(4), 189-213.

임정훈 · 임병노 · 이준(2008). 교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탐색. 한국교육논단, 17(1), 191-217.

전순호(2001). 중학교 안전교육의 개선방안. 한국안전교육학회지, 4(1), 149-164.

전영욱·김진모(2005). 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핵심직무역량모델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2), 111-137.

전제상(2010a).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교원연수지원 요구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4), 369-394.

전제상(2010b). 교원연수체제 개선 요구조사 분석. 한국교육논단, 9(1), 115-137.

전제상(2012). 교육연수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방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39-62.

전제상(2015).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안전교육 실태와 강화방안". 무엇이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가? 학교안전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정지범 · 윤건(201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 및 주요 해외 사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기획 협동연구총서 14-25-01.

조명연(2015). 학교안전 정책 방향.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성신여대 학교안전연구소. 학교안전연구소 콜로키움 자료집.

조인식(2014a). 학교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64호.

조인식(2014b).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249.

최상덕 외(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2011-01.

최희천(2010). 재난관리단계의 기존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6(1).

한국교육개발원(2014). KEDI 2014 해외교육동향, 2014.6.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홍혜정(2014). 독일의 학교 안전교육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The Eduforum August 254호. 34-38.

황명진(2014). 세월호 사건과 재난위기방지 시스템-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국가미래연구원.

Communications & Training Methods Committee, AIHA. Effective Training Techniques for SH&E Professionals

Department for Education, UK. 2014.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Statutory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s.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3.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education: a whole school approach.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2. Health and safety training : A brief guide.
Jerry W. Gilley, Steven A. Eggland, Anm Maycumich Gilley. 장원섭 역(2011). 인적자원개발론. 학지사
Jenny McWhirter and Cassius Francis, 10 principles for effective safety education,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Summer 2008 Guiding Principles, pp8-9.
NSH. National Patient Safty Agency. http://www.nrls.npsa.nhs.uk/
Principles of effective safety education. 2012. Dr Jenny McWhirter and Cassius Francis.
Safety First - Making sure your visit to the UK is safe and enjoyable, 2014. British Council.
Training teachers to deliver risk education : Examples of mainstreaming OSH into teacher training programmes. 2011.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http://www.rospa.com/safetyeducation/policy/ten-principles.aspx

수시과제 2015-02

학교안전교육 고시를 위한 연구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안전연구소**

136-74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 길 과학관 710-712호

전 화 : (직통) 02-929-7673, (내선) 02-920-2158~9

전자 우편 : ssri2014@sungshin.ac.kr

홈페이지 : http://www.sungshin.ac.kr/safety